



섹션 504에 따른 비 차별 조항 공지

규정 안내문

뉴욕시 교육청(DOE)에서는 1973년 제정된 재활 법 섹션 504(섹션504)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오직 장애를 이유로 교육청에서 제공하거나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비밀보장 권리는 존중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 [A-710](#)에서는 섹션 504에 정의된 장애가 있어 자격요건이 되는 교육청 학교 및 프로그램 재학생 및 교육청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 교육청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생을 위한 교육청 프로그램과 활동 또는 비-교육청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학교 504 코디네이터나 학교장, 보건 디렉터에게 연락하시거나 504Questions@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규정 [A-830](#)에서는 직원, 학부모, 학생 및 기타 교육청 대상 사업자, 교육청 시설 이용자 또는 교육청과 기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 교육청 차별 방지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섹션 504 권리 또는 절차 관련 직접 문의:

학생 및 학부모:

Section 504 Program Manager
Office of School Health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212) 287-0354
504Questions@schools.nyc.gov

외부 리소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32 Old Slip, 26th Floor
New York, NY 10005-2500
(646) 428-3900
<http://www.ed.gov/>

2025년 3월 개정

OFFICE OF LEGAL SERVICES • 52 CHAMBERS STREET • RM 308 • NEW YORK,
NY 10007

Telephone: (212) 374-6888 • Fax (212) 374-5596